

## 제천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5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9년 6월 일  
제출자 : 제천시장

### 1. 제안이유

- 화장시설·봉안시설 설치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「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2008. 9. 22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장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조항 신설, 장사시설 관련 조례를 통합 관리 및 상위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용어 정의 개정 (안 제2조)
- 제천시 공설 장사시설의 명칭이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 2005년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『제천시 영원한 쉼터』로 변경되었으나 조례에 미반영되어 금번 조례에 반영(안 제7조)
- 사용료 감면 중 화장시설 주변마을 협약에 의거 포전리 주민 사용료 전액 면제 조항 신설 (안 제10조)
- 장사시설 관리·운영의 민간 위탁 조항 신설 (안 제12조)
  -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장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하는 마을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.
  - 위탁 운영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 일부 지원
  -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 3년 단위로 연장
- 사용자의 자격 범위 확대 (안 제16조)
  - 사용자의 자격 범위를 제천시 관내 거주자에서 그의 가족(부모·배우자·자) 및 기 안치되어 있는 사망자의 배우자까지 확대
- 사용기간이 경과된 유골의 처리 조항 신설 (안 제19조)

3. 의안전문 : 불임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5. 관계법령 : 불임

첨 부 1. 의안전문 1부.  
2. 관련법령 1부.  
3.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.

## 제천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제천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

#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“영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에서 설치한 장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“장사시설”이란 묘지 · 화장시설 · 봉안시설 · 자연장지 · 장례식장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.
- 2.“봉안”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.
- 3.“봉안당”이란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
- 4.“공설장사시설”이란 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시장은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· 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 · 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묘지등의 수급계획 수립)**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묘지등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 · 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.  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 · 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5조(봉안시설의 설치장소)** ① 영 제11조 별표1 및 제18조제1항 별표3에서 봉안시설(공설, 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한다)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 “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”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로·철도·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이상 떨어진 곳.
  2.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나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.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시계가 상당 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**제6조(묘지 등의 설치제한 지역)**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“붕괴·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·고시한 재해 위험 지구. 다만,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2.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·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.
3. 그 밖에 산등성이나 급경사지로 붕괴우려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.

## 제 2 장 공설장사시설

### 제 1 절 설치 및 운영관리 등

**제7조(명칭 및 위치)** ① 제천시 공설장사시설의 명칭은 “제천시 영원한 쉼터”(이하 “영원한 쉼터”라 한다)로 하고 위치는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 594번지에 둔다.

- ② 영원한 쉼터내에는 공설 화장시설 및 공설 봉안당(이하 “봉안당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**제8조(사용허가 등)** ① 영원한 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영원한 쉼터중 봉안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사용료 등)** ① 영원한 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봉안당 사용시 부부용 봉안함 사용료는 최초 사용 허가시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사용료 납부 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.

**제10조(사용료 감면)** ① 시장은 영원한 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망일 현재 송학면 포전리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영원한 쉼터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50% 감면할 수 있다.

1. 사망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.

2. 사망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자중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.

3. 장기동 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운영시간)** ① 영원한 쉼터 운영시간은 08:00부터 17:00까지로 한다.

②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사용시간 외에도 운영할 수 있다.

**제12조(위탁운영)**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설 장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설 장사시설이 소재하는 마을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.  
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 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 할 수 있다.  
 ③ 위탁이 종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장사시설의 관리·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장부 및 장비·비품 등을 시에 무상 귀속한다.  
 ④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받고자 하는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기간 만료시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

**제13조(수탁자의 의무)**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  
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 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  
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충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제천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.  
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**제14조 (위탁의 취소)**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.
2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.
3.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.
4.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.

## 제2절 봉 안 당

**제15조(시설)** 봉안당에는 무연고실과 유연고실을 둘 수 있다

**제16조(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)** ①봉안당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사망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
  2.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의 부모, 배우자, 자
  3. 이미 안치되어 있는 사망자의 배우자
  4. 제천시 관내 거주 외국인
  5. 그 밖에 시장이 제천시민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관외거주자
- ②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사용기간)** ①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, 15년 단위로 3회에 한해 연장사용 허가 할 수 있다. 다만, 무연고 유골의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연장하지 아니한다.

②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제9조제1항에 의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.

**제18조(유골봉안)** ①봉안하는 유골은 봉안함의 규격에 맞는 유골함에 안치하여야하며 유골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.

②유골을 봉안할 때에는 번호를 부여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, 봉안함에는 대장에 기재된 번호 및 성명을 부착하여야 한다.

③유골봉안 중 연고자로부터 유골의 인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고관계를 확인 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.

**제19조(사용기간이 경과된 유골처리)**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기간이 경과한 무연고 유골은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.

- ②유연고 유골 중 연고자로부터 유골인도 요구가 없거나 연장신청을 통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30일간의 사용료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최고 하여야 한다.
- ③연고자가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3개월 이상의 공고 후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 할 수 있다.

**제20조(원상복구 및 실비변상)** 봉안당 사용자 및 관람자가 기물 및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 제3장 보 칙

**제21조(준용)**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제천시공유재산 관리조례」, 「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22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조례의 폐지)**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「제천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」 「제천시 납골당설치 및 사용조례」 「제천시 공동(공설)묘지공원 화사업추진협의회 운영조례」는 폐지한다.

**제3조(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화장시설 및 봉안당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.

## 『제천시 영원한 쉼터』 사용료

### ○ 화장시설 사용료

구분	기준	사용료	
		제천시 관내	제천시 관외
15세이상	1구당	150,000원	300,000원
15세미만	1구당	100,000원	200,000원
개장유골	1구당	100,000원	200,000원
태아	1구당	40,000원	70,000원
적축물	1kg	10,000원	

### ○ 봉안당 사용료

구 분	제천시 관내			제천시 관외 지역			사용 기간
	합계	사용료	관리비	합계	사용료	관리비	
개인단(1구)	160,000	100,000원	60,000원	400,000	300,000원	100,000원	15년
부부단(2구)	320,000	200,000원	120,000원	800,000	600,000원	200,000원	

(비고 : 제천시 관내란 시체인 경우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, 개장유골인 경우 묘소 소재지가 제천시인 경우를 말하며 제천시 관외란 제천시 관내 이외의 주소지를 말한다)

## [관계법령]

### 장사 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08. 5.26] [법률 제9030호, 2008. 3.28, 일부개정]

- 제4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·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- 제5조 (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·화장시설·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와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·화장시설·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(수급)에 관한 중·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중·장기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.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·장기계획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, 시·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중·장기계획 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,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의 기간·범위·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9조(분묘의 설치기간)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범인묘지의 설치·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.

**제36조 (비용의 보조)** ① 국가는 공설묘지·공설화장시설·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설치·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·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, 묘지 면적의 축소, 그 밖에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조사·연구 등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##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08.9.22] [대통령령 제21025호, 2008.9.22, 타법개정]

**제3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

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,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·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,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을 설치·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.

**제9조 (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)**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체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.

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무연고 시체 등을 화장하지 아니하고 매장 또는 봉안한 경우에는 화장을 하여야 한다.

**제24조 (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)** ① 법 제20조제5항과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한다.

② 공설묘지·사설묘지의 설치자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

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.

## 지방자치법

[시행 2009.4.1] [법률 제9577호, 2009.4.1, 일부개정]

제136조 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 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에 따른다.

## 제천시 공고 제 2009 - 686

제천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
2009. 5. 7.

제 천 시 장

### 제천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#### 1. 규 칙 명 : 제천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#### 2. 개정이유

- 화장시설·봉안시설 설치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「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2008. 9. 22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장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조항을 신설하고,
- 장사시설 관련 조례를 통합 관리 및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며,
- 현재 납골당 사용자의 자격이 제천시 관내 거주자로 제한되어 있어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제천시 납골당 사용자격에 대한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용어 정의 개정 (안 제2조)
- 제천시 공설 장사시설의 명칭이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 2005년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「제천시 영원한 쉼터」로 변경되었으나 조례에 미반영되어 금번 조례에 반영(안 제7조)

- 사용료 감면 중 화장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협약에 의거 포전리 주민에 대한 사용료 전액 면제 조항 신설 (안 제10조)
- 장사시설 관리·운영의 민간 위탁 조항 신설 (안 제12조)
  -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장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하는 마을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.
  - 위탁 운영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 일부 지원
  -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 3년 단위로 연장
- 사용자의 자격 범위 확대 (안 제16조)
  - 사용자의 자격 범위를 제천시 관내 거주자에서 그의 가족(부모·배우자·자) 및 기 안치되어 있는 사망자의 배우자 까지 확대
- 사용기간이 경과된 유골의 처리 조항 신설 (안 제19조)

#### 4. 의견서 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09년 5월 28일까지 청원시장 (참조 : 경로복지팀장)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연락처 (043)641 - 5713, FAX(043)641 - 5689 담당자 : 조 은숙

-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, 주소
- 기타 참고 사항 등

★지방사회복 지주사보	경로복지팀장	사회복지과장			
조은숙	한시주	전결 05/29 최남용			

##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서

「제천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」 전부 개정 조례(안) 입법예고 공고기간이 종료되어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1. 입법예고 조례명 : 제천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(안)

2. 공고번호 : 제천시공고 제2008-686호

3. 공고기간 : 2009. 05. 07. ~ 05. 28. (20일)

4. 공고매체 : 제천시보 및 제천시홈페이지(입법예고)

5. 공고내용 : 별도붙임

### 6. 공고결과

○ 조회수 : 65명

○ 의견제시자 : 1명

- 성명 : 익명

- 의견제시 내용 : 「별표 1」화장시설 사용료의 구분란에서 화장시설 사용자는 모두 죽은자이므로 「죽은 태아」를 「태아」로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라고 의견제출

7. 반영결과 : 제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별표1의 「죽은 태아」를 「태아」로 변경하고자 함.

불임 : 공고안 1부 끝.